



사회적 채권 원칙

사회적 채권 발행 위한 자발적 절차 가이드라인

2021년 6월

면책 조항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웹사이트의 지속가능금융 섹션에 게재된 사회적 채권 원칙 영문판이 사회적 채권 원칙의 공식 버전이다. 본 번역문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됨을 밝힌다.

서문

사회적 채권 원칙(SBP)은 녹색채권 원칙(GBP), 지속가능성 채권 가이드라인(SBG) 및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원칙(SLBP)과 함께 "원칙(The Principles)"의 체계 하에서 수립되었다. "원칙(The Principles)"은 채권 발행에 관한 자발적인 프레임워크의 집합체로서 글로벌 자금 조달 시장이 환경적·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향한 발전에 대해 자금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명시적 사명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원칙(The Principles)"은 사회적 그리고/또는 환경적 목적을 가진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적용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한다. 이는 투명성과 공시성을 강화함으로써 채권 시장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이다. 또한 "원칙(The Principles)"은 금융 시장 참가자들에게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채권 발행사가 더 큰 사회적 편익을 달성하는,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추진 시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에 입각하여 발행되는 채권은 투자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프로젝트가 사회적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채권 발행사가 사회적 채권 조달 자금의 사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조달 자금이 사회적 프로젝트로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적 프로젝트의 예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사회적 이슈와 결과물에 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와 인식의 발전을 고려하여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해 상위 범주만을 제공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 자체 기준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여러 다른 보완적 기준들과의 관련성을 언급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원칙”에 참가하는 회원사와 옵서버사는 물론 넓은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집합적이고 자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글로벌 사회적 채권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반영하여 필요시마다 업데이트 된다. 사회적 채권 원칙 및 일반적 “원칙”은 사무국의 지원 하에 집행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과 더불어 “원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행사 차원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접근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조달자금 사용에 관한 항목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 의지는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또는 발행사의 전략 및 공시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는 파리협정을 위한 전환 계획을 다루고 있는 「기후 전환 금융 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에 설명되어 있다. “원칙”이 다루고 있는 상품 및 관련 가이던스는 부록 2에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2021년판 사회적 채권 원칙(SBP)

2021년판 사회적 채권 원칙은 2021년판 녹색채권 원칙과 마찬가지로 2020년 중 회원사 및 옵서버사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제공한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사무국의 지원 하에 집행위원회가 결성한 워킹그룹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2021년판은 사회적 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함께 사회적 채권 프레임워크 및 외부 검토에 관해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발행사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이행 의지를 더욱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발행사가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중요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감소 방안 수립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공한다. 또한 권고되고 있는 시장 관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과 업데이트도 포함한다.

이 개정판에는 「사회적 채권의 임팩트 보고에 관한 프레임워크(Harmonised Framework for Impact Reporting for Social Bond)」, 「외부 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ternal Reviews)」 그리고 이들을 보완하는 「가이던스 핸드북(Guidance Handbook)」 등에 포함된, “원칙”에 대한 보완적 가이던스도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채권의 정의

사회적 채권은 조달자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신규 그리고/또는 기존의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 또는 차환 조달하는데 전적으로 활용되는 채권의 형태이다. (아래의 ‘조달자금의 사용’ 섹션 참고) 사회적 채권은 사회적 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채권이 존재하는데 이는 부록 1에 기술되어 있다.

어떤 사회적 프로젝트는 녹색 편익을 함께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채권으로서 채권 조달자금의 용도는 대상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에 근거하여 발행사가 결정해야 한다. (녹색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를 모두 지향하는 채권은 ‘지속가능성 채권’으로 불리워지며 이 채권에 대한 별도의 가이던스는 ‘지속가능성 채권 가이드라인(SBG)’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채권을 사회적 채권 원칙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와 부합하지 않는 채권과 대체가능하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2021년 판 이전의 사회적 채권 원칙에 의거하여 발행된 채권도 사회적 채권 원칙에 부합되는 채권으로 인정된다.

사회적 채권 원칙 (Social Bond Principles)

사회적 채권 원칙(SBP)은 사회적 채권의 발행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채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시성, 그리고 완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절차 가이드라인이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다음과 같이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즉, 발행사에게는 신뢰할 만한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에 관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채권 투자의 긍정적 임팩트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를 제공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발행사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정보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은행, 인수기관, 주관기관, 모집기관 등이 해당 사회적 채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핵심 구성요소>와 <주요 권고사항>을 통해 발행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고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채권 원칙에 부합하는 채권은 다음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갖는다.

1. 조달자금의 사용
2.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3. 조달자금 관리
4. 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사회적 채권 프레임워크
- (ii) 외부 검토

1. 조달자금의 사용

사회적 채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채권의 조달자금이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이는 증권의 법률 서류에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는 명확한 사회적 편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발행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정량화되어야 한다.

조달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차환 발행을 위해 사용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발행사는 신규 발행 대차환 발행의 비중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되며,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투자안이나 프로젝트가 차환 발행 되는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차환 발행되는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의 과거 프로젝트 포함 기간(Expected Look-back period)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회적 프로젝트는 특정의 사회적 이슈에의 대처나 경감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며, 그리고/또는 특히 특정 계층을 위한 (하지만 전적으로 특정 계층만을 위하지는 않는다)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추구한다. 사회적 이슈는 사회 전체 또는 특정 계층의 행복을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해손하는 것이다. 의문을 피하기 위해 대상 계층의 정의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 일반 공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 프로젝트 카테고리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한다.

다음의 프로젝트 카테고리 리스트는 예시적이지만, 사회적 채권 시장이 지원하거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종류의 프로젝트를 나타낸다. 사회적 프로젝트는 특정 자산, 투자안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와 관련을 가지면서 R&D 비용과 같이 관련이 있는 지원성의 기타 지출을 포함한다.

사회적 프로젝트의 카테고리는 다음 항목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적정 가격의 기본적 인프라 설비 (예: 깨끗한 음료수, 하수도, 위생설비, 수송기관, 에너지)
-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접근 (예: 건강, 교육 및 직업훈련, 건강관리, 자금조달 및 금융서비스)
- 적정 가격의 주택
- 사회경제적 위기에 기인한 실업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설계된 일자리 창출 및 그 프로그램. 중소기업 자금공급 및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잠재적 효과를 포함

- 식량 안전보장과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예: 식품 영양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영양가 높고 충분한 식품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성.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음식 손실과 폐기물 감소.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성 향상)
- 사회경제적 발전과 역량 강화 (예: 자산, 서비스, 자원 및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통제. 소득격차 축소를 포함하여 시장과 사회로의 공평한 참여와 통합)

특정 계층의 사례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들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빈곤선 이하로 사는 사람들
2. 배제되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혹은 커뮤니티
3. 장애인
4. 이민이나 난민
5.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6. 필수적 재화·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 소외자
7. 실업자
8. 여성 그리고/또는 성적 및 성 소수자
9. 고령층과 청년 취약층
10. 자연재해 이재민을 포함한 기타 취약계층

사회적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많은 범주와 기준들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며 이를 보완적 가이던스로 활용할 수 있다. 발행사와 이해관계자들은 ICMA 웹사이트의 지속가능금융 섹션(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서 입수할 수 있는 사례 연구와 사례들을 언급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프로젝트는 산업 분야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2.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사회적 채권 발행사는 아래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사회적 프로젝트의 사회적 목표
- 발행사의 프로젝트가 상기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 범주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 발행사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인식한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보완적 정보

또 발행사는 다음 항목을 수행할 것이 권장된다.

- 발행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중요한 목표, 전략, 정책 및 프로세스의 맥락 하에서 상기 정보를 표시한다.
- 관련 적격성 기준에 관한 정보와 가능한 경우에는 배제 기준 정보 및 프로젝트 선정에 참고한 사회적 표준 또는 인증체계에 관한 정보도 있으면 이를 공개한다.
- 관련 프로젝트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관련하여 중대 리스크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발행사가 잠재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 완화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 분석과 모니터링을 포함해야 한다.

3. 조달자금 관리

사회적 채권의 순 조달자금 또는 이와 동일 금액은 별도 계정으로 귀속되어, 별도 포트폴리오로 이동하거나 발행사에 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추적되고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발행사의 투융자업무와 연계된 공식적 내부 프로세스 안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사회적 채권 잔액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추적되고 있는 순 조달자금 잔액은 동 기간중 이루어진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에의 자금배분과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발행사는 배분되지 않은 순 조달자금 잔액의 임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회적 채권 조달자금은 채권별로 관리될 수도 있고 (개별 채권 방식) 복수의 사회적 채권에 대해 집합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 방식)

사회적 채권 원칙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권장하며, 사회적 채권 조달자금의 내부 추적 방법과 자금의 배분에 관한 검증을 위해 발행사의 조달자금 관리를 외부 감사인 또는 기타 제3의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것을 권유한다. (아래 ‘주요 권고사항’ 섹션 참고)

4. 보고

발행사는 자금 용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쉽게 입수 가능한 형태로 생성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조달자금이 최종 배분될 때까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례보고서는 사회적 채권 조달자금이 배분된 프로젝트 리스트와 프로젝트의 간단한 설명, 배분 금액과 예상되는 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밀유지협약이 존재하거나, 경쟁상황이 존재하거나, 대상 프로젝트 갯수가 너무 많거나 하여 정보의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를 포괄적인 형태로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의 배분 비중) 제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전달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정성적 성과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성과 지표 (예 : 목표 계층의 수혜자 숫자)를 사용하되 정량적 지표에 사용된 주요 방법론과 가정사항을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발행사는

가능한 경우 「사회적 채권의 임팩트 보고에 관한 프레임워크 (Harmonized Framework for Impact Reporting for Social Bonds)」가 제공하는 가이던스와 보고 양식을 언급하고 이를 채택해야 한다.

사회적 채권 또는 사회적 채권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과 이 특성이 사회적 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요소와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문을 제시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다. 템플릿은 ICMA 웹사이트의 지속가능 금융 섹션 (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작성 완료시 시장 정보로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자료 센터’ 섹션 참고)

주요 권고 사항

사회적 채권 프레임워크

발행사는 자사의 사회적 채권 또는 사회적 채권 프로그램이 사회적 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의 관리 그리고 보고)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회적 채권 프레임워크 또는 법률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채권 프레임워크 그리고/또는 법률 서류는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발행사는 발행사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전략의 관점 하에서 이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사회적 채권 프레임워크에서 요약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 검토

발행사는 외부 검토기관을 선정하여 발행전 외부 검토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자사의 사회적 채권 또는 사회적 채권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프레임워크가 사회적 채권 원칙의 상기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의 관리 그리고 보고)와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채권 발행 후에는 외부 감사인 또는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이들이 발행사의 내부 추적 시스템과 사회적 채권 조달자금의 배분을 검증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조달자금 관리를 보완하는 것이 권고된다.

발행사가 자사의 사회적 채권 발행 절차와 관련하여 외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시장에는 몇 가지 형태의 외부 검토 방식이 있다. 발행사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방식에 대한 권고와 설명을 필요로 할 경우 「외부 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ternal Reviews)」을 참고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외부 검토와 관련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촉진하기 위해 “원칙”이 개발한 것이다. 이는 발행사, 인수기관, 투자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및 외부 검토기관에게 외부 검토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와 투명성을 제공하는 시장 기반의 이니셔티브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외부 검토기관들이 자신의 신인도, 전문 분야를 공개하고 외부 검토 작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소통할 것을 권장한다. 발행사는 자사의 웹사이트나 적절한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외부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ICMA 웹사이트 내 지속가능 금융 섹션 (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 올라와 있는 외부 검토 템플릿도 사용하여 공개한다.

자료 센터

권장 템플릿과 기타 사회적 채권 원칙 자료는 ICMA 웹사이트 내 지속가능 금융 섹션 (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서 입수할 수 있다. 위 링크를 따라가면 완성된 템플릿도 자료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다.

면책 조항

사회적 채권 원칙은 절차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사회적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의 매매 권리나 어떤 형태의 조언(세무, 법무, 환경, 회계, 규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채권 원칙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발행사는 사회적 채권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이며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회적 채권 원칙을 채택해 실행하는 것이며, 사회적 채권 발행 판단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발행사가 발행하는 사회적 채권에 관한 약속이나 조달 자금의 용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채권의 인수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해당하는 법률이나 규칙, 규제와 사회적 채권 원칙에 나타난 가이드라인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각국 법, 규칙, 규제가 우선된다.

부록 1

사회적 채권의 형태

현재 사회적 채권의 형태는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시장 발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채권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개정판에 반영된다)

- 일반형 (Standard Social Use of Proceeds Bond) : 사회적 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면서, 발행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채권
- 사회적 수익형 (Social Revenue Bond) : 사회적 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지만, 발행자의 신용이 아닌, 수익·요금·세금 등의 담보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상환되는 채권.
- 사회적 프로젝트형 (Social Project Bond) : 사회적 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사회적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기반으로 상환되는 프로젝트 채권. 발행자에게 잠재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 사회적 증권화형 및 커버드 본드 (Social Securitized and Covered Bond) : 사회적 채권 원칙 기준에 맞추어 발행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특정 사회적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된 채권으로 커버드본드, ABS, MBS 그리고 기타 구조화된 채권 등을 포함한다. 일차적 상환 재원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다. 사회적 주택, 병원, 학교 등을 담보로 한 커버드 본드를 예로 들 수 있다.

주 1

"퓨어 플레이(pure play)"라고 불리는 지속가능 테마로 한 채권시장이 있는데 동 채권은 사회적 지속가능 활동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발행한다. 이 채권은 사회적 채권 원칙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따르고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해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채권"이라 칭함으로써 사회적 채권 원칙의 속성을 보유한 것처럼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기존의 사회적 또는 기타 테마 채권에 대해 가능한 한 사회적 채권 원칙의 베스트 프랙티스 (예를 들어 보고 요건)를 채택하는 것을 권장하며 향후 발행 시에도 사회적 채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 2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녹색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하는 지속가능성 테마형 채권시장도 있다. 그러한 채권은 지속가능성 활동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에서 발행되고 있으나 그 채권들은 사회적 채권 원칙의 네가지 핵심 구성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에 대해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성 채권" 또는 "SDG"라 칭함으로써 사회적 채권 원칙 (또는 녹색채권 원칙)의 속성을 보유한 것처럼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들 발행 기관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SDG 또는 기타 테마 채권에 대해 가능한 한 사회적 채권 원칙의 베스트 프랙티스 (예를 들어 보고 요건)를 채택하는 것을 권장하며 향후 발행 시에도 사회적 채권 원칙 또는 녹색채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녹색채권 원칙과 사회적 채권 원칙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로 매핑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발행사, 투자자, 채권시장 참여자가 SDGs에 비추어 특정 녹색, 사회적 또는 지속가능성 채권 및 채권 프로그램의 자금조달 목적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준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ICMA 웹사이트 지속가능 금융 섹션 (sustainable finance section)에서 입수 가능하다.

주 3

발행사들은 그들의 사회적 채권을 사회적 채권 원칙과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원칙 둘 다에 부합시키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그러한 접근방식은 발행사의 재량에 맡겨지며 권장하지도 막지도 않는다.

부록 2

The Principles



* 녹색채권 원칙, 사회적 채권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성 채권 가이드라인 체계 하에서는 채권의 순 조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격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전적으로 사용되나 (→ 조달자금의 사용),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원칙 체계 하에서는 조달자금은 발행사의 일반적 목적의 KPI 또는 SPTs(지속가능성 성과 목표)를 위해 주로 배정된다 (→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LB)과 조달자금의 사용(UoP)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채권은 두 가지 형태 채권 가이던스를 모두 따라야 한다.